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 _Vol.11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2.27 ~ 2022.1.2) -

January 3,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④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2021년 마지막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 처리방안 점검** –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 차질없이 추진 – '공공부문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1.12→'22.6월),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유예'('21.12→'22.3월) 시행 기 연장조치에 이어 금번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도 6개월 연장('21.12→'22.6월)하고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0.8조)도 1년 연장 –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 '22.3월말까지) 연장여부도 '22.1분기중 검토할 방침 ② **최근 고용상황 및 '22년 고용정책과제 점검** – 취약계층 지원강화 측면에서 '22.1월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 조기채용(연간 직접일자리 106만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21년 1.2만→'22년 2.8만명) 등을 적극 추진 ③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 문화·여가,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하여 국가자격 도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시장안착 지원 예정 * ❶신기술·융합, ❷교육·의료, ❸문화·여가, ❹농림·수산, ❺환경 등 5개 분야 ④ **'22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 – 뉴딜2.0 6대 과제* 및 탄소중립 4대 과제** 등 내년도 집중 추진할 10대 중점과제를 미리 선정,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논의 * 뉴딜 2.0 6대과제 : ❶청년정책 및 돌봄교육격차 완화 ❷신산업 육성 ❸그린에너지 모빌리티 확산 ❹뉴딜성과 지역확산 ❺뉴딜펀드 활성화 ❻사업구조 개편 노동전환 지원 ** 탄소중립 4대과제 : ❶배출권거래제 개선 ❷기업 인센티브 지원 ❸기후대응기금 ❹녹색분류체계 확산 ⑤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이 있음	2021-12-30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22년 1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22년 1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 뉴딜** – 인공지능 시대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21년도보다 확대된 규모*로 추진할 계획(1월 말 공모예정) * '21년 190종(3,705억원) → '22년 310종(5,797억원)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선을 설계(소프트웨어 상에서 선체, 상부 구조물, 어업설비 등의 모듈 조합)하는 'A.I. 기반 어선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1월 1주 공모) * AI 활용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특히, 빠른 설계가 가능해져서 건조 여건 향상) –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기술융합 예술 창·제작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 (1월말 공모 예정) ② **그린 뉴딜** – '22년 핵심 사업을 신속히 착수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 – '21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와 속도를 높여 성과를 확산 – 그 밖에도 갯벌식생 복원사업 공모,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사업 등으로 국토해양의 녹색생태계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 * 기수생태계: 강물(담수)과 바닷물(해수)이 만나 염분의 농도가 강물보다는 높고 바닷물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강의 하구 일대의 생태계 ③ **휴먼 뉴딜** – '22.1.1.부터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적용·시행될 예정 – 대학원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그간 학부생만 받을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 전문기술석사)에게도 지원 예정(1/5~5/19)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④ **지역균형 뉴딜** – '22년 재정투자 예정인 68개 지역균형 뉴딜 중점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 계획 – 시도별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반영 추진 가이드 라인 마련,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2021-12-30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전담팀(TF)를 구성하여, 총 8회의 회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함 이번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현한다는 정책 목표하에, ①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②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③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④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개선의 4대 과제로 구성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 모의시험체계 활용확대, 중앙 시스템 작업통제 강화, 인공지능 기반 업무 지능화 등 추진 ②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 네트워크 구조개선,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비 강화(공사데이터베이스 구축, 예비전원 확보 등) 추진 ③ **네트워크장애 복원력 제고** – 통신사간 백업체계 구축, 재난와이파이(Public Wi-Fi Emergency) 개방, 소상공인 백업 등 지원	2021- 12-29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자원부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新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 확대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① **탄소중립 대전환** : ('21년) 8,248억원 → ('22년) 1조 1,961억원(45% ↑) ②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 ('22) 2,640억원(13.9% ↑) ③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 ('22) 1조 6,816억원(8.1% ↑) ④ **혁신성장 신산업(빅3)** : ('21) 6,159억원 → ('22) 7,870억원 (27.8% ↑) ⑤ **중소 · 중견기업 지원 강화, 인력양성 투자 확대** 등이 있음	2021-12-28
	•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전력계통 혁신방안」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등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전력계통 혁신 간담회」를 개최, 2030 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력계통이 직면한 문제를 전력망 건설, 운영, 그리고 전반적 제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진과제를 일차적으로 도출한「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함 주요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① **장기간 소요되는 송전망 건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 확대**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전력망 계획인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1.9월)에 NDC 상향을 반영한 전력망 보강 로드맵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반영 (先 전력망 後 발전)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사전에 구축하여 단지 준공 즉시 계통망에 연계 – 계획된 송•변전설비 건설 지연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 절차 개선	2021-12-29

부처	내용	일시
	② **확대되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계통 안정화 도모** –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을 '25년까지 구축하고, 배전망이 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배전망 접속용량 상향 및 필요시 제어를 통해 관리하는 '先 접속 後 제어'(Connect & Manage) 도입 – 전원믹스 전환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설비기준을 포함한 전력계통 운영규범을 재정립하고, 계통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기구 마련 등 거버넌스 개편 검토 ③ **지역 그리드 정착, 수요 분산 및 시장 매커니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 – 권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이루는 전력망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력망 수요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 재생에너지에 내재된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시장제도의 단계적 도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본격 추진	
고용 노동부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힘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 · 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②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③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이 있음	2021-12-29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충 >** ①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22년중 500만원 상향 ('22.2월) ②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22.1.27.) ③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 확대 ('22년 1분기) ④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2.6월까지 연장 ('22.1월~'22.6월) 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 ('22.1.31.~) ⑥ **(우대형 주택연금)**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 확대 ('22년 1분기) **<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 지원 확대 >** ⑦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22.3월) ⑧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22년 1분기) ⑨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22년 상반기) **<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 >** ⑩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22.1월) ⑪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신설 ('22년 하반기)	2021- 12-30

부처	내용	일시
	⑫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 ('22.1월) ⑬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22.11월) ⑭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 연장 (~'22.10월)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 ⑮ **(ESG 정보 플랫폼)**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운영 ('21.12.20.) ⑯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22년 하반기) ⑰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2년 중 600억원) 공급 ('22.4월) ⑱ **(소수단위 주식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해외주식 '21.11월, 국내주식 '22.3분기) ⑲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21.12.13.) ⑳ **(외부감사 대상 확대)**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 ('22.1월) **<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 확대 >** ㉑ **(DSR 강화)** 총대출액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22.1월) ㉒ **(신용대출 규제 예외)**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 ('22.1월) ㉓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21년말 → ~'22.6월말) ('22.1월)	

부처	내용	일시
	㉔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 상향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22.1월) **<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 >** ㉕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22년 1분기) ㉖ **(보험료 부담 경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 (최대 3년) ('22.1.1.) ㉗ **(외화보험 제도개선)**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 강화('22.2분기) ㉘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22.2.18.)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1. 시행) 현재 담배 도매업자나 소매인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담배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있음 국민들이 이러한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규칙에 따라 담배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폐업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려는 것임	2021-12-29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2.1.1. 시행)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2021-12-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 (제43조제3호 신설) ③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 · 면 · 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④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101조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및 제103조의28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제103조의31제6항 신설) ⑥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제103조의59제4항 신설) ⑦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⑧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제146조제2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12.28. 시행)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021-12-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적용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행상 적용되어 온 「관세법」상 입출항 ·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게 유리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②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 합리화 (제12조제8호)** –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해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③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명확화 (제14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38조제4항 신설)** –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종 외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신고, 외국물품 등의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의 반출신고,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의 처분신고 및 외국물품 등의 멸실 · 분실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④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제20조제1항)** –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⑤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근거 마련 (제38조제6항 신설)** – 입주기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화물단위를 유지한 채 보관 · 사용하지 않고 개인 구매단위로 분할 · 병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⑥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 (현행 제70조제2항제7호 삭제, 제7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 외국물품 등에 대한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후 그 적재기간을 넘겨 해당 외국물품 등을 적재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12.30. 시행)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하여 결함시정이 어려운 경우 제재수단 마련,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 이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자동차에 사용되는 촉매제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방지 및 시장상황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021-12-3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1.1. 시행 예정)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 · 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유가금속 등의 회수, 재생원료 제조 등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021-12-3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12.30. 시행)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 · 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 이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절차,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 · 해임 신고 방법,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등 (안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 –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신청서에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 가공업, 휴게 · 일반음식점영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유주방 운영과 관련된 영업등록과 영업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②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 · 해임 신고 등 (안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는 직무 수행 내용 및 결과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며,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시간을 3시간으로 정함 ③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 별표 14 및 별표 17)**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식품제조 · 가공업 등 영업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함 –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제조 · 가공 · 소분 · 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 · 보관하도록 함 ④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안 별표 23)**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일, 2차 위반시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함	2021-12-3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21.12.30. 시행)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 이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 · 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 취소 (제6조제1항 및 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②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제19조)** –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 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③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 (제27조)** –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021-12-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④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 (제30조)**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⑤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 (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⑥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 (제36조)** –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 ·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⑦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 (제38조제1항제5호)**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⑧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 (제44조제2항)**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 ·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 · 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과징금의 감경 · 면제 취소 사유 마련 (제51조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 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 · 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 · 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금융 위원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12.28. 시행)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1- 12-28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급변하는 방송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판로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채널 운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 (안 제4조)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 제한 폐지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폐지 –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폐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폐지 (안 제15조제1호) ③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안 제16조) ④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채널 구성과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 (안 제53조) 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 (안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⑥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 (안 제55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간 재송신을 전체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허용 – 해당 방송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상품의 소개 또는 판매 방송프로그램을 1일 3시간 이내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12/28(화)~'22/2/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로 제출	2021- 12-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정부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송전사업자의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를 통해 해상풍력의 대규모화 및 민간 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발전의 보급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송전사업자의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先투자 건설 대상 기준 신설** –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사업계획에 공동접속설비 건설계획이 포함된 단지 – 설비용량이 2,000MW 이상 단지 선투자 건설 원칙 – 다만, 설비용량이 1,000MW 초과 2,000MW 미만인 단지 중 전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지 ※ 의견 제시기간 : 12/30(목)~'22/1/2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로 제출	2021-12-30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21.8.26.)」의 후속조치로 초기창업자 투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정비 (안 제6조)** –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 삭제 –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출자지분 요건을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투자 및 조합 운용능력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전문개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조합 운영 경력이 있거나 투자 관련 경력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양성교육 이수자로 요건을 강화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 취득 및 소유 금지 (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제36조)** –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를 제한하는 반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	2021-12-3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 신설 (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36조)** –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대표,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연대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 신설 ④ **주식연계채권 매입행위 제한 (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36조)** – 현행 법령에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하여 매입 등이 제한되는 주식, 지분이 주식연계채권(교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거래제한 종류에 주식, 지분 이외 주식연계채권을 포함 ⑤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금지대상 확대 (안 제8조, 제36조)** – 조합의 보유 자산의 매각이 제한되는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중인 다른 투자조합 및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 ⑥ **업무집행조합원 행위제한 예외 규정 명확화 (안 제9조, 제37조)** –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매입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취지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명확화 ⑦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편입 등에 대한 행위제한 예외 인정 (안 제9조, 제17조, 제26조, 제37조)**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 ⑧ **회계감사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 (안 제10조, 제22조, 제31조, 제38조)** –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회계감사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 ⑨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중기부 통보절차 신설 (안 제11조)** –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해당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⑩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기준인 전체 투자금액 기준 명확화 (안 제15조)** –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기준을 자본금 또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 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조합의 투자금액 중 창업기획자의 출자 비율만큼 투자한 금액도 투자의무 기준에 포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⑪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대출 기준 마련 (안 제16조, 제25조)** –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대출에 대한 판단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⑫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부동산 소유 예외 근거 신설 (안 제17조, 제26조)** –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취득·소유가 가능한 부동산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⑬ **'엔젤투자매칭펀드'의 구주 인수금액을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로 인정 (안 제24조)** –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창업자 주식을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인수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에 포함 ⑭ **창업투자회사의 미투자 예외 사유 정비 (안 제32조)** – 창업투자회사의 행정처분 예외에 해당하는 요건 중 총자산 투자의무를 충족한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벤처투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에 투자를 해야하는 요건을 삭제 ⑮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최소금액 기준 완화 (안 제34조)** –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결성 최소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 ⑯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수 산정 특례 정비 (안 제34조)** – 민간자금 유입 및 민간모펀드 조성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 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 ⑰ **벤처투자조합의 현물출자 허용 (안 제34조)** –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현금 이외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출자금 및 출자비율 산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신설 ⑱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 (안 제42조)** – 현행 법령에서 정한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의 후속 성장 지원 등을 신설 ⑲ **검사서류의 행정규칙 위임 근거 마련 (안 제47조)** –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검사를 목적으로 제출받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자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신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⑳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등의 권한 위임 (안 제48조)** – 법 제72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위임이 필요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등록, 변경등록 및 개인의 투자확인서 발급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 ㉑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등의 위탁규정 정비 (안 제48조)** – 법 제7조에 따른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벤처투자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변경하고, 현재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 중인 벤처투자정보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위탁 근거를 신설 ㉒ **금융관련 법령 등에 벤처투자법이 포함되도록 타법 개정 (안 부칙)** – 타법에 따른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하는 등 타법 개정 추진 ※ 의견 제시기간 : 12/30(목)~'22/2/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359호, 2021.7.27. 공포)으로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검사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의견 제시기간 : 12/30(목)~'22/2/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제출	2021-12-30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1인)」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민감정보에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음. 생체식별정보는 그 특성상 동의나 인지없이 촬영 등을 통해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2 신설)	2021-12-30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1인)」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음 1인 창조기업은 2016년 약 26만 개에서 2020년 약 42만 개로 약 1.6배 증가하는 등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매출도 늘어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기업의 특성상 정보 및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유통망 진출까지 이어지지 않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시 · 박람회 참가, 통 · 번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신설)	2021-12-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경유,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따르면 옥탄값 기준으로 보통휘발유는 옥탄값 91 이상 94 미만, 고급휘발유는 9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도 주유소별로 옥탄값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가격표시판에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제품별 옥탄값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제3항 및 제49조제2항제5호)	2021-12-30
국토교통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자동차제작자 등은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정보 검색을 어렵게 해놓거나 판매가격보다 낮게 공개하는 등 소비자가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된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 등)	2021-12-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1인)」**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해양생물의 괴사는 물론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영향을 주어 비만, 당뇨병, 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에게 플라스틱 함유물의 사용을 억제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제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종류, 유해성 및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을 소홀히 한다면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여전히 생태계 파괴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2021-12-29

④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②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79조제8항 및 제261조제3항제3호의3 신설 등) ③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02조제2항 단서 및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2021-12-30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운동부 및 국군체육부대 내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정보 수집을 위해 운동경기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구조 개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체육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으로 환수하고, 위탁운영비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문체육선수 등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안 제14조의4)	2021-12-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② 학교운동부, 국군체육부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축·운영하도록 함 (안 제18조의13)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함 (안 제25조)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20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구매하지 않도록 함 (안 제30조)	
국토교통위원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수출입(물류) · 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에 대한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융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으로 정하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등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69조의3 신설) ② 조합은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 관련 자산 등에 대한 투자, 개별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조합의 사업 범위·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69조의4 신설) ③ 조합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69조의5 신설)	2021-12-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④ 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안 제69조의6 신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또는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9조의7 신설) ⑥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9조의8 신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9조의9 신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조합의 재무상태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할 경우 등에는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9조의10 신설)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별첨1】참조		
국회사무처	1/3(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입법지원단 제안 입법의견」 발간	
	1/7(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1호 발간	
국회도서관	1/5(수)	「금주의 서평」 - '로스차일드 이야기' / 금융산업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입법조사처	1/6(목) 14:00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세미나 개최	한국 거래소

[별첨1] 제392회 국회 임시회 상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1/4(화) 10: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안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
국방위	1/5(수) 14:00	전체회의	법안상정 및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농해수위	1/5(수) 13:30	전체회의	법안 의결
국토위	1/4(화) 10:00	전체회의	법안 의결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4(화) 14:00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 차기 정부 이렇게 준비하자	김영배, 박수영 의원실, 한국행정연구원	의원회관 1소회의실
1/5(수) 14:00	2022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도종환 의원실, (사)한국이벤트협회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1/5(수) 14:00	스마트 수산어촌 포럼 창립 및 기념 세미나	위성곤, 어기구, 이만희, 이원택, 김정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16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2/27(월)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 발간 -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률 수록	
	12/28(화)	「현안, 외국에선?」 제26호 발간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예산정책처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2월호 발간 - 코로나19 확산 전후 민간부분 부채 변화 국제 비교 -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주중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발간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지출 확대와 세대간 영향을 중첩세대 모형(OLG-CGE)을 이용하여 분석	
미래연구원	12/30(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5호 발간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27(월) 09:30	차기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박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27(월) 10:00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윤영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30(목) 15:00	'21 FORUM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나인선** | 소속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